

9. 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 改正

財務部令 제 1822 1990.4.10 公布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의 2 중 “준조합원”을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으로 한다.

제 1 조의 3 의 제목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를 “(저울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 1 항의 표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저 축 상 품
4. 세금우대 수익증권 저축종합 통장	1인당 500 만원의 한도안 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직접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 (당해 신탁재산의 100 분의 60 이상을 법 제 4 조 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 에 의한 국·공채를 그 발 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 의 수

구 분	저 축 상 품
	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 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제 1 조의 4 를 제 1 조의 5 로 하고, 제 1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조의 4 (저울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 자소득) ①영제 2 조의 3 제 1 항에서 “재 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 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 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 한국의환은행법폐지법을 부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 금융채권

②영 제 2 조의 3 제 2 항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공채”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공채를 말한다.

③영 제 2 조의 3 제 3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는 별지 제 23 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 2 조의 3 제 3 항제 1 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1. 1인당 500 만원의 한도안에서 국·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 5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공채에 대하여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

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 계좌를 포함한다.

⑤동일인이 영 제 2 조의 3 제 3 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2이상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예탁통장을 개설하거나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영 제 2 조의 3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전산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 24 호서식과 같다.

⑦영 제 2 조의 3 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 2 조의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공채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내인 것으로 하며, 예탁 또는 등록된 국·공채의 합계액이 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영 제 2 조의 3 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영 제 2 조의 3 제 3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국·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예탁한 국·공채를 인출하는 경우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등록된 국·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유증·경매·강제집행을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 1 조의 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조의 6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① 영 제 2 조의 5 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총수입금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에 규정된 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② 영 제 2 조의 5 제 3 항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이하 “수시이자지급국·공채” 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가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이자지급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이자에는 그 양도하기전 최종이자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begin{aligned} & \text{각 사업년도의 수시이} \\ & \text{각 사업년도의} \times \frac{\text{가지급 국·공채이자}}{\text{각 사업년도의}} \\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총수입금액}}{\text{총수입금액}} \\ & \times \frac{75}{100} \end{aligned}$$

③ 영 제 2 조의 5 제 3 항제 3 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수시이자지급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④ 영 제 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 12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영 제 2 조의 5 제 5 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 25 호서식과 같다.

⑥ 법인세법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 2 조의 5 제 3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 2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그 감면신청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6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의 3 본문중 “영 제 12 조의 2 제 2 항”을 “영 제 12 조의 2 제 3 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 1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 37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 27 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 38 조의 3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 28 호서식과 같다.

제 13 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 67 조의 11 제 1 항·법 제 67 조의 12 제 1 항 또는 법 제 67 조의 1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영 제 55 조의 9 제 1 호부문·영 제 55 조의 10 제 5 항 또는 영 제 55 조의 11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제 1 항중 “영 제 52 조제 4 항제 4 호”를 “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제 2 호”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영 제 52 조제 5 항”을 “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제 1 호”로 하며, 동조제 3 항중 “영 제 37 조의 2 제 4 항”을 “영 제 37 조의 2 제 5 항”으로 한다.

제 15 조제 1 항중 “영 제 47 조제 2 항·영 제 52 조제 4 항 및 영 제 55 조의 3 제 4 항”을 “영 제 47 조제 3 항·영 제 49 조제 2 항·영 제 55 조의 3 제 4 항·영 제 55 조의 9 제 6 항·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영 제 55 조의 11 제 4 항 및 영 제 55 조의 12 제 4 항”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감면)신청서”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삭제하며, 동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 47 조제 2 항·영 제 49 조제 3 항 및 영 제 50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 7 호서식과 같다.

제 15 조의 2 본문중 “영 제 36 조의 2 제 4 항”을 “영 제 36 조의 2 제 4 항·영 제 37 조의 2 제 4 항 및 영 제 37 조의 3 제 4 항”으로 한다.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8 조 (대규모사업의 사업시행면적기준) ①영 제 47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재

무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다만,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로 한다.

2.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

②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사업으로서 시행지역이 연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 19조제 1항중 “영 제 50조제 8항”을 “영 제 50조제 5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에”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 4항중 “영 제 50조제 10항”을 “영 제 50조제 6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며, 동조제 6항중 “대한주택공사등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로 하고, 동조제 7항중 “대한주택공사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영 제 50조제 13항”을 “영 제 50조제 8항”으로, “대한주택공사등으로부터”를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로 한다.

제 20조를 삭제한다.

제 20조의 2제 1항제 2호중 “제 18조제 3항제 2호 내지 제 13호”를 “제 18조제 3항제 2호 내지 제 19호”로 하고, 동조제 2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③제 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수입금액·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조제 7항 내지 제 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조의 3제 1항본문중 “영 제 55조의 3제 1항제 1호”를 “영 제 55조의 3제 2항제 2호”로 하고, 동항제 2호단서중 “법인세법시행령 제 124조의 6제 1항제 2호 내지 제 5호”를 “영 제 55조의 11제 1항제 2호 내지 제 5호”로 하며, 동조제 2항중 “영 제 55조의 3제 1항제 1호”를 “영 제 55조의 3제 2항제 2호”로 한다. 제 20조의 6 내지 제 20조의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0조의 6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희토지등의 판정) 법 제 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희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0 조의 7 (5 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 67 조의 11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 55 조의 9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 55 조의 9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 55 조의 9 제 1 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

④영 제 55 조의 9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 31 호 (갑) 서식과 같다.

⑤법 제 67 조의 11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 31 호 (을) 서식을 구

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 8 (2 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 67 조의 1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 55 조의 10 제 5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준공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시공일 또는 준공일이 경과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 55 조의 10 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 동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 1 호서식과 같다.

제 20 조의 9 (2 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영 제 55 조의 11 제 1 항제 4 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3 항제 2 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 59 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 34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2 항 및 제 13 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 9 조 및 제 12 조제 1 항·제 2 항중 “경

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 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제 6 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 조제 1 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 조제 1 항”으로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1 조제 1 항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로 한다.

④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로 한다.